



## 인권의 시각에서 본 동성애

980400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총무)

### 1. 인권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

'인권'은 사람으로서 태어난 이상 빼앗길 수 없는 권리이다. 이것은 결코 막연한 개념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현대사회에서는 세계인권선언과 각종 국제인권조약들, 그리고 그것을 반영하는 각국의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인권개념은 시대와 역사적 발전과정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개념이다. 인권은 보편적인 것이지만 시대와 역사적인 발전 과정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인권개념은 만들어 가는 개념이며 지배세력과 피지배세력간의 긴장에 따라 변화, 발전해 가는 개념이다.

인권운동이 어려운 것은 인권개념이 '모호'하고 '포괄'적이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인권개념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해나간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인권개념을 진보적인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은 우리의 과제일 것이다.

인권개념에는 역사의 발전에 조응하는 세개의 세대가 있다. 인권개념의 세 가지 단계는 순차적으로 나타나 앞의 단계가 소멸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확대되면서 보완되어 간다.

#### 근대시민혁명과 제1세대인권 - 자유권 혹은 시민·정치적 권리

'자유'의 의미로서 정치·국가권력의 오용과 남용에 대해 개인을 보호하는 방패막

- '세계인권선언'에 나타난 자유권 조항-

인종 및 그와 유사한 형태의 차별로부터의 자유(2조)

인간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안전에 관한 권리(3조)

노예 기타 자발적이 아닌 예속상태로부터의 자유(4조)

고문 기타 비인간적인 처우·처벌로부터의 자유(5조)

임의적인 체포·구금 또는 추방으로부터 자유(9조)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10조)

사생활 및 통신에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12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18조)

의사표현의 자유(19조)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20조)

재산을 소유하고 임의로 박탈당하지 않을 자유(17조)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정부에 참여할 권리(21조)

#### 자본주의의 모순과 제2세대 인권- 사회권 혹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사회권의 주체는 경제적·사회적 양자로 실질적 평등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요구

'세계인권선언'에 나타난 사회권 조항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22조)

일할 수 있는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는 권리(23조)

일정기간의 유급휴가 등 휴식과 여유를 가질 권리(24조)

건강 및 행복에 필요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25조)

교육을 받을 권리(26조)

자신의 지적 창조물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27조) 등

## 제국주의 수탈과 3세대 인권 - 집단권 혹은 연대권

2차세계대전 이후의 반제국주의운동을 반영하는 권리

앞의 1,2단계의 권리가 개인을 보호하는 권리라면 이 3단계 권리는 집단의 권리, 3세대 인권개념은 아직 형성단계에 있음

정치,경제,문화 등의 자결에 관한 권리

경제 및 사회발전에 대한 권리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권리

평화에 대한 권리

다를 수 있는 권리

깨끗하고 균형있는 환경에 대한 권리

인도주의적인 재난구제에 대한 권리

인류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만듦으로서 인간의 권리에 대한 인류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가 만들어온 여러 결실 중에서도 가장 유익한 것일 수 있으나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은 지난함과 동시에 여러 국가들의 정치적 타협의 결과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19세기까지 동성애는 악이나 죄로 취급당하거나 범죄 혹은 질병으로 간주 당해 온갖 차별과 탄압의 대상이었다. 예를 들어 1861년까지 영국에서 동성애자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는 범죄자였으며 독일에서는 형법 제175조에 의해 남성간의 동성애 금지조항이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치료자들은 동성애자의 성적 경향성을 바꾸고자 약물치료, 혐오요법, 전기충격, 거세 및 자궁절제 같은 방법을 시도하기도 했다.

20세기에 이르러 스톤웰항쟁 같은 사건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혁명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다. 1952년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간된 DSM-I(정신질환의진단통계편람 제1판)에는 동성애를 단순히 성적편차의 일종으로 "사회(병질적) 성격장애(sociopathic personality disturbances)"에 분류시켰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의 로비와 정치·사회적 투쟁으로 1974년 수정 발표한 DSM-II에는 동성애에 정신병리학적인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표명했다.

즉 1974년에 이르러서야 동성애를 정신병리적인 성격장애나 성적인 적응장애(sexual orientation disturbance)가 아니라 -질병의 한 형태가 아니라 - 성적 지향의 한 형태(sexual orientation)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20세기 중반인 48년도에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이나 인권에 관련된 중요문서에는 "성적 지향의 한 형태로 동성애"에 관한 차별금지조항을 둔 것이 없다.

### '평등권'으로서 차별금지

세계인권선언 제2조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정치적 또는 그밖의 신념·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출생 또는 그밖의 지위등을 이유로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않는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공정한 임금 및 어떠한 차별도 없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한 보수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률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나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법률의 보호를 똑같이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정치적 또는 그밖의 신념·의견·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출생 또는 그밖의 지위에 기인하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그러나 앞서 얘기한 것을 상기한다면, 인권은 시대 역사적인 배경 속에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개념이라는 핵심을 놓치지 않는다면, 21세기 인권개념의 하나인 "다를 수 있는 권리(rights to different)"에 주목하기 바란다. 동성애는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성적 지향"의 또다른 표현이다.



## 2. 동성애인권운동의 나아갈 길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역사는 무척 짧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의 동성애운동은 친목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인권운동으로 시작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동성애인권운동가들은 동성애를 '개인적인 선택'이나 '취향'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모색하려는 진진한 고민을 하고 있다.

동성애인권운동이 갖는 의미는 지난 20여 년 간 한국의 인권운동이 양심수, 정치범의 인권만을 이야기해온 한계를 벗어나 "성적 소수자의 다룰 수 있는 권리"를 옹호함으로써 새로운 인권개념의 지평을 넓히는 것과 동시에 새롭게 인권운동의 역사를 기술하는 일일 것이다.

성적 소수자의 권리란 즉 성적 소수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동성애인권운동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인권'의 관점을 명확히 하는 것은 다른 사회운동과 연대를 이루게 하는 '최소공약수'를 확보하는 일이다. '인권'의 이름으로 여성, 노동, 인권 단체들과 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이끌어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동성애인권운동은 동성애자에게 가해지는 온갖 시민·사회·경제·문화적 차별을 철폐하는 운동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권리옹호운동 차원을 넘어서 궁극적인 인간해방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 인권운동은 다음과 같은 어려운 조건에 놓여있다.

### ① 소수자에게 붙여지는 사회적 낙인(stigma)

우리사회에서 동성애자는 다른 소수자보다 열악한 지위를 가지며 사회적 낙인도 심하다. 우리사회의 기준이나 표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배타'시키거나 '이지메'시키는 등 사회적 차별이 심하다.

### ② 소수자에 이기에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어려움

- 동성애자 조직이 약한 것에서 오는 한계 (예를 들어, 퀴어영화제 탄압에 대한 대응의 미미함등)
- 사회운동세력 안에서조차 소수자라는 점(운동권속의 운동권, 소수자중에서도 소수자, 사회연대의 어려움)

### ③ 굳건한 가족중심주의 가치관과 장자중심주의 가부장적 질서

가장 중요한 사회단위는 가족이라는 인식, 따라서 가족을 깨는 행위는 반인륜적 범죄로 인식,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를 가족에게 전가시키는 태도

앞으로 동성애 인권운동 발전을 위한 몇 가지 메모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 ① 성에 대한 얘기 공론화(AIDS누명으로 벗어나자)

-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제거,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확대
- 교육, 고용에서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금지 조항 신설
- 정규교육에서 동성애에 관한 성교육 실시
- 이성애 중심주의 성담론을 다양하게 제기
- 언론모니터

### ② 여러 사회운동과 연대의 끈 형성

- 노동운동, 여성운동, 인권운동과의 연대 긴밀히 모색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소수자들과 연대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성애자 자신들이 소수자로서의 자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다른 소수자들이 어려울때 동성애자들이 그들의 이름으로 함께 투쟁하는 것이 연대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우리사회에서 차별받는 소수자중 외국인동자들의 인권문제, 장애인 등 등

### ③ 동성애자들에게 성적 정체성에 대한 자존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 전개



- HOT - LINE

-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때 법률지원

- 쉼터 운영

현재 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성애 운동은 크게 3가지 흐름이 있다.

첫번째가 동성애 자체를 비범죄화시키는 것 두번째가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한 차별을 금지시키는 것 세번째가 법률로서 레즈비언과 게이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첫번째의 경우, 1960년대부터 서구의 많은 국가들이 동성애를 비범죄화 시켰다. 그 이전에는 동성애를 형법으로 금지시켰던적이 있었다. 1961년 헝거리부터 시작해서 1995년 알바니아까지 유럽, 오세아니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두번째 일부국가들이 “성적지향”에 기초한 차별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는 헌법에 평등권으로서 게이·레즈비언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다.

세번째, 같은 성 사이의 관계를 법률로서 인정하는 것은 그들이 시민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고용연금, 의료보험, 주택임대, 이민의 권리의 승인이 서구에서는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같은 성간의 관계를 첫번째 인정한 법은 1989년 Danish law로 “registered partnerships”란 법률적 지위를 가졌다. 비슷한 법이 1993년 노르웨이에서 1994년 스웨덴에서 인정되었다. 1995년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는 “registered partnerships”를 상호승인하는데 동의했다.

### 3. 국제인권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성애

- 아래 글을 통해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인권기구에서 동성애가 인권의 가치로서 어떻게 자리매김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국제인권조약은 인류가 “인권”의 이름으로 합의한 최소한의 인간권리이다. 그 동안 많은 민간단체의 노력에도 동성애는 아직 국제인권기구에서는 ‘권리’ 혹은 ‘인권개념’으로 명문화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제기한 것처럼 ‘인권’이 만들어져가는 개념이라는 것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현실이 오늘날 동성애인권운동에 박차를 가해야할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1992년 8월 유엔인권포럼에서 동성애자는 “amist some open hostility to his remark”에 대해 공개적인 첫 발언을 했다. 발언자는 레즈비언과 게이가 유엔에서 활동을 못하고 있고 레즈비언 게이조직은 협의자격조차 없음을 지적했다.

레즈비언 게이조직은 1993년 비엔나세계인권대회에서 처음 만남을 가졌고 세조직이 참여했다. 경제사회이사회에 협의자격을 획득한 첫 번째 레즈비언 게이조직은 International Lesbian and Gay Association( ILGA)로 투표에 의해 1993년 결정되었다. 전통적으로 합의에 의해 만들어지던 결정을 경제사회이사회는 포기했다. 그러나 1993년 9월 유엔은 ILGA 협의자격을 문제를 제기했다. 1994년 6월 그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였으나 다시 부각되었다.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유엔의 발의권은 다시 제기되었다.) ILGA의 협의자격을 보류되었고 현재 계류상태다.

지금까지도 레즈비언과 게이에 대한 차별에 관한 발의권은 유엔차원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다. ILGA의 협의자격 보류는 유엔 인권활동에서 성적 지향에 관한 이슈를 지속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레즈비언과 게이 문제를 국제인권활동에서 제외시키는 요소는 무엇인가?

첫째, 지속되는 스티그마를 들 수 있다.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레즈비언과 게이에게 소수자로서 낙인을 찍고 있다. 동성애에 반대하는 형법이 아직까지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전세계적으로 인종, 여성차별문제와 비교했을 때 레즈비언과 게이에 가해지는 차별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둘째, 열악한 조직을 들 수 있다.

국가, 지역, 국제적 수준에서 레즈비언과 게이조직력은 약하다. 개인이 참여하는 거대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자 중에서도 레즈비언과 게이 조직은 가장 적을 것이다.

셋째, 많은 국가들이 유엔에서 발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들 수 있다.

종교적 바탕을 둔 국가들은 국제적 차원에서 레즈비언 게이 운동을 반대하고 있다. 로마카톨릭, 이슬람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들은 동성애 이슈를 어렵게 하고 있다. 비엔나세계인권대회때 케나다는 선언문 초안에 평등조항으로서 “성적 지향”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반서구적인 수사학은 차별을 정당화시켰다. 말레이시아 총리는 유엔총회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미국스타일의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조롱했다.

국제인권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성애에 관한 논의수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유엔인권위원회와 인권소위원회

1993년 Mr. Louis Joinet(유엔인권소위원회 위원, 프랑스)씨는 호모포비아와 인종에 관한 새로운 포럼에서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이 연구과제가 되도록 제안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95년 8월 그는 AIDS 혹은 HIV에 의한 차별 금지 조항을 결의안에 상정하도록 제안했다. 이 결의안은 주변화의 결과로 HIV 전염이 확대되면서 “경제·사회·법적 지위에서 오는 불이익으로부터 고통”받는 아홉가지 그룹을 언급했다. 그 리스트에 동성애는 포함되지 않았다. Mr. Louis는 이 카테고리에 동성애가 추가되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Ms. Warzazi와 Ms. Gwanmesia는 수정조항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열개 나라가 수정조항을 찬성했고 다섯개 나라가 반대했으며 여섯 개 나라가 기권했다.

#### ② 비엔나세계인권대회와 북경여성대회에서의 반차별에 대한 관심

비엔나세계인권대회에서 레즈비언·게이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던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이다. 캐나다는 비엔나세계인권대회 최종 성명서 초안에 “성적지향”을 평등권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에는 변경되었다.

“성적지향”에 관한 논란은 1995년 제4차 북경여성대회에서 다시 제기되었다. 북경여성대회 행동강령 초안에 “성적지향”과 관련해 네 가지 언급이 있었다. 두 가지 언급은 다양성이라는 문구에 부합된다. 세 번째 언급은 모든 국가가 성적지향으로 인해 고용상 차별을 없애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네 번째 언급은 모든 국가가 성적지향으로 인해 박해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적 조항을 들 것을 요청했다. 초안위원회에서 수시간에 걸친 논쟁 끝에 Ms. Patricia Licuanan 씨는 유엔 포럼에서 성적지향에 관한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며 보다 더 많은 논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초안위원회에서 “성적지향”에 관한 내용을 행동강령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33개 국가가 찬성했고 20국가가 반대했다.

#### ③ 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기구는 No 111(the Convention on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or Occupation)에서 고용에 있어서 동성애차별문제를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시키기보다는 당사국에게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 ③ 국제보건기구

국제보건기구는 1987년 AIDS에 관한 전지구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국제보건기구는 HIV/AIDS가 게이와 관련된 질병이 아님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갔다. 국제보건기구는 게이와 여성, 소수자들에게 향해지는 차별이 HIV/AIDS 예방에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ILGA는 국제보건기구가 주최하는 다양한 HIV/AIDS 회의에 참석해왔다.

④ 난민고등판무관

난민이란 종교, 인종, 국적, 특별한 사회집단 혹은 정치집단의 멤버십 때문에 박해를 받는 개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은 “사회적 집단”에 레즈비언 게이를 포함해서 해석하고 있다. 이 해석은 많은 나라들이 수용하고 있다.